

이 보도자료 상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
바라며, **2014. 12. 8.(월)** 조간용으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보 도 자 료 2014. 12. 5.(금)

공보담당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김장희
전화 02-3270-4302, 4322

자료 문의 : 형사제2부
전화번호 : 02-3270-4309,4329
주책임자 : 형사2부장 이성희

제 목

100년 전통 장수기업 「A제약사」 사상 최대 리베이트 수수 적발
- 적발자 총 927명, 159명 기소, 924명 행정처분 의뢰 -

개 요

- 서울서부지방검찰청 「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」 (단장 : 형사2부장 이성희)은, '14. 12. 2.(화) 전국 **923개** 병의원 의사에게 **50억 7,000만원** 상당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'A제약사' 영업 본부장 1명 및 에이전시 대표 2명과 이들로부터 **300만원에서 3,000만원** 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총 **161명**을 인지하여 이 중 159명 (이미 고발된 1명 포함)을 불구속 기소하고 **3명**을 기소중지 하였음
 - ※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923명 및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,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에 의뢰함
-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규 시행(2008. 12. 14.) 이후 단일사건 적발 규모로는 사상 최대임
 - ※ 기존에는 리베이트 수수액 48억원이 최대
-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제공자 뿐만 아니라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'쌍벌제'가 시행된 이후(2010. 11. 28.)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
- 식품의약품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은 앞으로도 불법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(※ 별지 '주요 피의자별 범죄사실 요지' 참조)

1

주요 범행 수법

- 시장조사 등 대행업체(이하, 에이전시)를 이용한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
 - 'A제약사'는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, 에이전시 3개사를 통해 거래처 의사에게 설문조사·광고를 실시한 후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2010.초경부터 2011.중순경까지 1회에 5만원 내지 1,1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4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
 - ※ 에이전시 : 제약회사를 대신하여 의료인을 대상으로 시장·설문 조사, 번역 및 광고 업무 담당
 - 공정경쟁규약상 시장조사 등은 판촉 활동이 되어서는 아니되고, 영업부서 활동과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'A제약사'는 자사 의약품 판촉 목적으로 조사 대상 의사를 선정하는 등 모든 업무를 영업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, 에이전시는 'A제약사'에서 사전에 선정한 의사 계좌로 금전을 송금
 - ※ 공정경쟁규약 : 의약품 거래에서 부당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약사가 준수해야 할 원칙 및 강령(한국제약협회에서 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)
- 현금, 상품권 등을 이용한 고전적 리베이트 제공도 병행
 - 신규처방 대가인 '랜딩비'(Landing), 처방유지·증대를 위한 '선·후 지원금' 등 명목으로 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병·의원 의사에게 현금,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 제공
 - ※ A제약사는 거래처 병의원 리스트에 선지원 거래처를 'SG'로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고, 단속기관 점검시 'SG'를 '소액판촉물(Small Gift) 제공 거래처'로 변명하도록 지시
- 원룸 월세를 대납해 주는 등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
 - 'A제약사' 영업사원은 경기도 평택 소재 某의원 의사(별지 기재 7번 의사)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 뿐만 아니라 원룸을 임대하여 제공한 후, 월세 까지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

● 명품지갑 등 고가 물품 제공

- 2011.말경 타 제약사 알레르기용 ‘ㄱ’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자, ‘A제약사’는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복제의약품 ‘ㄴ’을 월 100만원 이상 처방하는 병의원 의사에게 명품지갑을 그 대가로 제공

※ 루이비통 등 81만원 상당의 명품지갑을 29명에게 지급(2,350만원 상당)

●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한 리베이트 자금 마련

- ‘A제약사’는 거래처 의사에게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업사원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카드·현금 영수증을 회의·식대 비용 명목으로 허위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 마련

※ 몇몇 영업사원들은 단골 식당에서 허위 결제 후 취소하는 방법, 버린 영수증을 줍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영수증 확보

2

수사의 의의

●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

- 이번 사건은 ‘쌍벌제’ 시행(2010. 11.) 이후는 물론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 시행(2008. 12.) 이래 단일 사건 최대 리베이트 규모임
-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오랜 전통의 중견 기업마저도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확인시켜 준 사례임

● 반복적, 관행적 리베이트 제공 사실 확인

- ‘A제약사’는 201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거래처 의사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 적발되어 시정명령 및 8억 9,8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음
- ‘A제약사’는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및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기간에도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반복적 또는 관행적으로 현금 등을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해왔음

-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및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,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불법 인식이 미흡하고, 제약사는 매출 감소를 우려해 여전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엄단함으로써 제약업계 및 의료인 등에게 경종을 울림

3 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

● 관련 부처에 약가 인하 및 행정처분 요청

-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,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, 리베이트 공여 'A제약사'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의뢰 조치하였음

● 의료법·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

- 리베이트 제공·수수자에 대한 현행 법정형이 “2년 이하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”으로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불가능하여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 소지가 있고,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 비하여 처벌 형량이 지나치게 낮음
-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리베이트 관련자 확인 시 그 불법 및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의료법·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

●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활동 추진

-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, 2014년 3월 “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”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전함에 따라 『식품·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』으로 확대 개편되었고, 보건복지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경찰청,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리베이트 수사를 추진하고 있음
- 앞으로도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☐

별지

주요 피의자별 범죄사실 요지

순번	피의자	피의사실 요지	수사결과
1	가○○(49세) A제약사 영업본부장	2010. 1. ~ 2012. 12.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사에게 약 50억 7,000만원 상당 제공	구공판
2	나○○(50세) 에이전시 E1 대표이사	2010. 1. ~ 2011. 3.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사에게 약 28억 8,000만원 상당 제공	구공판
3	다○○(51세) 에이전시 E2 대표이사	2012. 8. ~ 2011. 5.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사에게 약 9억 2,000만원 상당 제공	구공판
4	라○○(62세), 의사	2011. 3. 의약품 처방대가로 현금 3,000만원 상당 수수	구공판
5	마○○(43세), 의사	2011. 1. ~ 2011. 5. 의약품 처방대가로 3회에 걸쳐 현금 2,100만원 상당 및 명품 지갑 수수	구공판
6	바○○(35세), 의사	2010. 12. ~ 2012. 5. 의약품 처방대가로 7회 걸쳐 현금 2,050만원 상당 및 명품 지갑 수수	구공판
7	타○○(54세), 의사	2010. 12. ~ 2011. 3. 의약품 처방대가로 현금 425만원 수수, 2012. 2.~ 2012. 10. 원룸 월세 명목으로 400만원 수수	구약식